

| | | |
|--|-------------|---|
|  금융위원회 | 보도자료 |  금융감독원 |
| 9.10(목) 브리핑 시(14:00)부터 보도 가능 | | |

| | | | |
|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|--|
| 작성부서 | 금융위원회 중소기업과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국, 저축은행검사국, 상호여전감독국, 상호금융검사국 | | |
| 책임자 | 신진창 중소기업과장 (2156-9850) | 담당자 | 고상범 사무관 (2156-9861) |
| | 장병용 저축은행감독국장 (3145-6770) 안병규 저축은행검사국장 (3145-7410) 박상춘 상호여전감독국장 (3145-7550) 정성용 상호금융검사국장 (3145-8160) | | 박정원 사무관 (2156-9856) 김기환 사무관 (2156-9859) |
| 배포일 | '15. 9. 10(목) | 배포부서 | 대변인실(2156-9543~48) 총6매 |

제목 : 저축은행·상호금융의 '지역'과 '서민' 중심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「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」 추진

- ◆ **저축은행, 상호금융의 역할을 '지역'과 '서민' 중심으로 명확화**
 - ⇒ **중소 저축은행 및 조합의 지역·서민 금융 및 증금리 대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, 대형 저축은행 및 조합에 대해서는 외형 확대에 따른 건전성 규제를 강화**
 - '지역주의' 원칙 유지 및 외형 확대 지양
 -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확대시 원칙적으로 합병 인가를 불허
 - 상호금융권의 비조합원 대출한도 조정
 - 지역금융, 증금리 대출 등 서민층 지원에 대한 적극적 인센티브 부여
 - 지역금융 우수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지점설치시 증자 요건 완화
 - 증금리 대출 실적 우수 저축은행의 부대업무 우선 승인
 - 지역조합원 대출 및 신용대출에 적극적인 신탁 단위조합의 공동유대 확대
 - ※ '증금리 대출 활성화 T/F' 구성·운영 중 → 하반기 중 세부방안 마련·발표
 - 신용평가 역량 지원,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한 서민금융 역량 강화
 - '대부업·저축은행'간 신용정보 공유 및 신용평가시스템 개선 유도
 - 저축은행의 외부감사인 제도 개선, 신탁 예보기금 출연료율 조정, 신용공여 한도 조정 등 경영상 애로 요인 완화
 - 대형 저축은행 및 조합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강화
 - 대형 저축은행의 BIS비율 기준 상향 및 대형 조합에 자본보전완충자본 도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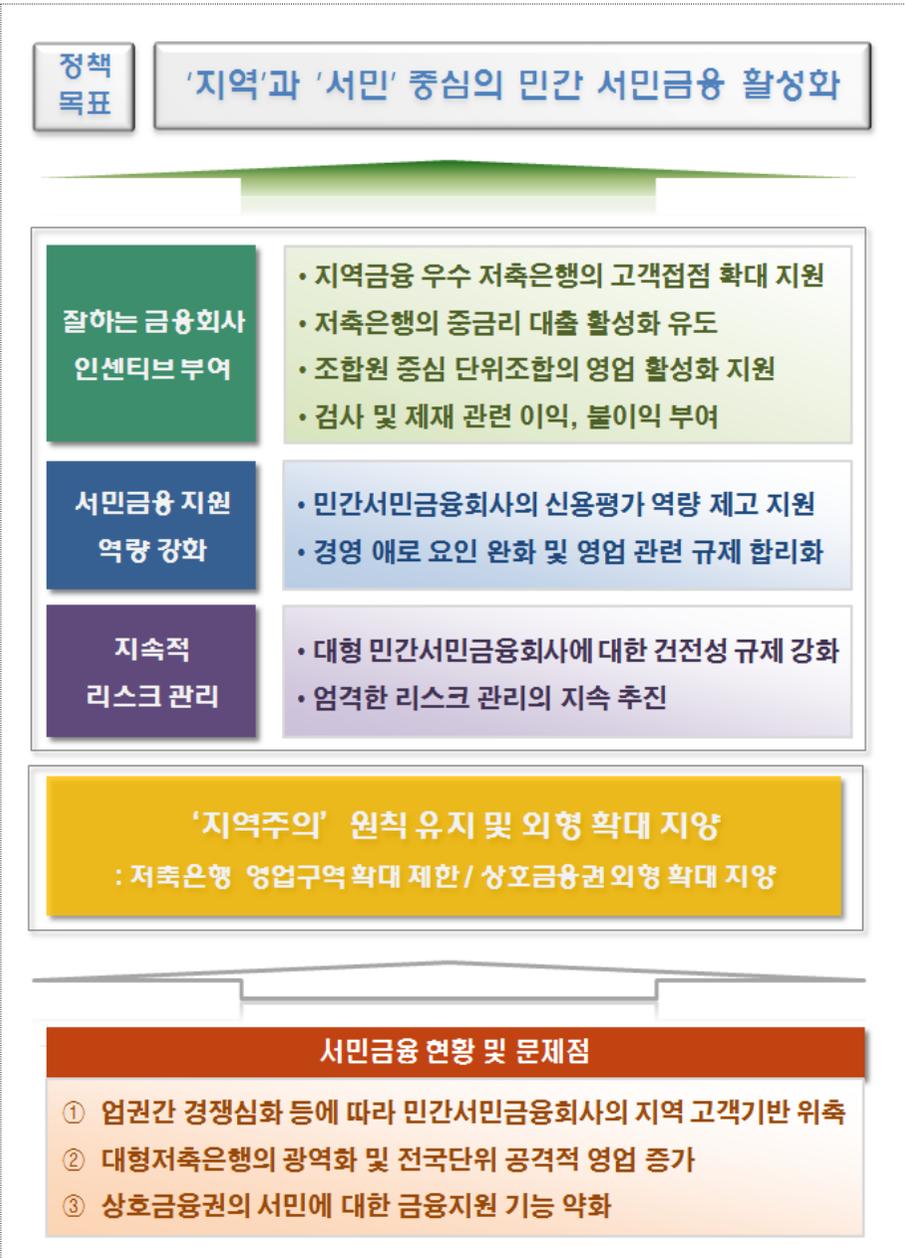
I. 추진 배경

-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개혁자문단 연구용역(해외사례 연구) 및 논의, 현장점검반 건의과제, 금요회 토론(8.28일) 등을 바탕으로
 - 제10차 금융개혁회의 심의(9.10일)를 거쳐 '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'을 마련하였음
- 저축은행, 상호금융은 지역 서민금융회사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, 서민금융시장에서의 실제 역할은 제한적인 모습
 - 저축은행, 상호금융권을 통한 증금리 대출 시장의 형성이 미흡하고, 신용등급별 금리 차등화도 부족
 -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확대 등 공격적 영업 전략, 상호금융권은 담보대출 위주의 보수적 영업 행태를 보이는 등 지역내 서민금융 역할 강화에는 소극적인 모습
- ⇒ 민간서민금융회사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, 서민금융시장에서의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구할 필요

II. 민간서민금융회사 관련 해외 사례

- 현재 유럽·미국은 전통적 의미의 지역 서민금융회사가 대부분 사라지거나 일반 상업은행과 유사한 형태로 진화
 - 그러나, 금융위기 이후 상업은행으로 전환된 서민금융회사가 대규모 손실을 보이면서, 긍정적 변화였는지에 대해 회의적
- 반면, 지역주의 원칙을 고수하고, 과도한 자산 확대를 지양한 서민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
 - * 지역주의에 충실한 독일의 저축은행협동조합은 금융위기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음 / 미국 협동조합은 소규모이나, 금융회사 소비자만족도 1위로 실생활 영향력이 높음
- ⇒ 지역주의 원칙 완화, 업무 범위 확대 등을 통한 과도한 외형 확대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

Ⅲ.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 기본방향



Ⅳ. 주요 내용

1. '지역주의' 원칙 유지 및 외형 확대 지양

▶ (금융개혁자문단 회의) "해외사례를 감안할 경우, 민간서민금융회사에 대한 지역주의 완화 및 과도한 외형확대는 금융위기시 대규모 손실을 초래한 경험이 있음. 서민금융회사로서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바람직"

① (저축은행의 영업구역 확대* 제한)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합병 인가를 불허**하고, 영업구역 외 지점설치도 불허

* 대규모 구조조정·합병에 따라 광역화된 저축은행이 증가 : 영업구역 3개 이상이 6개사
 ** 부실저축은행 인수 후 합병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

② (상호금융권 외형 확대 지양) 지역금융에 보다 중점을 둘 수 있도록 비조합원 대출한도 규제 조정 방안을 마련*(관계부처 협의 추진)

* (수협) 신규대출의 1/3로 제한(입법예고 완료) / (농협) 대출잔액의 1/2 미만으로 조정

2. '잘하는 민간서민금융회사'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

⇒ 지역금융 실적이 우수하고, 중금리·신용대출 등 서민금융 지원에 적극적인 민간서민금융회사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

▶ (금요회 사례발표 : 00 저축은행) "우리 회사는 지역, 서민을 위한 금융회사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수십년간 노력. 월1회 고객 방문, 지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에게 영업시간 종료 후 찾아가는 등 지역밀착형 영업을 실천하였고, 그 결과 지속적 흑자 실현. 지역밀착형 그리고 서민을 위한 금융지원에 노력하는 금융회사가 더 잘할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"

① (지역금융 우수 저축은행의 고객접점 확대) 영업구역 내 대출비중이 높은 중소형 저축은행*에 영업구역 내 지점설치시 증자 요건을 완화**

* (예) 영업구역 1개, 자산 1조원이하 /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비율을 10%p이상 초과
 ** (예) 기준자본금의 100% → 50% / 재무적 요건(BIS비율 8%이상 등)은 유지

② (서민층 부담 완화를 위한 중금리 대출 활성화) '은행-저축은행'간 중금리 연계대출 실적을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비율 산정시 우대*

* (예) (영업구역 내 대출) 1.5배 가중치 / (영업구역 외 대출) 영업구역 내 대출 간주, 0.5배 가중치

- 또한, 중금리 대출 및 영업구역 내 대출 실적이 우수한 저축은행에 대해 부대업무를 우선 승인(예: 실버바 판매 등)

* (예) 중금리 신용대출 비중이 전체 평균 이상 /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비율 5%p이상 초과

③ (조합원 중심 단위 조합 지원) 건전성이 양호하고, 조합원 대출 및 신용대출에 적극적인 단위조합*의 영업 활성화 지원

* 순자본비율, 조합원 대출 및 신용대출 비중이 '업권 평균 + α' 이상인 조합

- 신협 단위조합의 공동유대를 인접 시·군·구까지 확대하고, 상호금융권의 고위험 자산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률*을 현행 10%로 유지

* 요주의 이하 여신에 대해 10% 추가 적립률 적용 중(13.7월~) → '16.7월부터 20%로 상향 예정

④ (검사 및 제재 관련 이익, 불이익 부여) 지역금융, 중금리·신용대출에 적극적인 회사에 경영실태평가지 가점을 부여하고,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규제 위반* 등에 대한 임직원 제재 강화

* (예) 해임권고/면직 : (현행) 의무대출비율의 40%p 미달 → (개선) 30%p 미달 등

3. 인프라 구축, 규제 합리화 등 서민금융 지원 역량 강화

▶ (현장점검반 건의) "타 업권 대비 과도한 규제가 많아 영업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. 적극적인 서민금융 공급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 등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"

① (원활한 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신용평가 역량 제고) CB사를 통한 '대부업-저축은행'간 신용정보 공유를 추진('16.1월)하고, 신용평가시스템(CSS)을 보다 정교하게 개선*하도록 유도

* (저축은행) 신용평가시스템의 적정성을 주기적 점검, 결과를 경영실태평가 등에 반영 (상호금융) 신협은 '14.12월 CSS 고도화 구축 → 타 상호금융권 개선 추진

② (경영 애로 요인 완화) 저축은행의 외부감사인 지정 제도 개선*, 예금 채무에 대한 임원의 연대책임 완화 등 불필요한 부담 완화

* 회사 전체의 부실 감사와 관련성이 적은 사유를 제외하는 등 지정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

- 신협 예보기금의 출연료율을 조정(0.30%→0.25%)하되, 감액분에 대해서는 내부유보금 적립을 유도

③ (영업 관련 규제 합리화) 신용공여 한도 조정* 등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황변화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규제를 정비

* (저축은행 개인 신용공여 한도) 6→8억원 (상호금융 동일인 대출 한도) 50→100억원(자기자본 500억원↑/법인에 한정/비조합원 제외)

- 펀드 판매 허용* 등 영업 다변화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지원

* 불완전판매소지가 적은 펀드(인덱스펀드 등) 및 금융회사부터 선별적 인가 하는 방안 검토

4. 건전성 유지를 위한 지속적 리스크 관리

▶ (금융개혁회의 토론) "아직도 서민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. 건전성에 대한 철저한 관리 없이는 지속적인 서민금융 지원이 불가능"

① (대형사 건전성 규제 강화) 시스템 리스크 위험이 큰 대형 저축은행 (총자산 1조원↑) 및 조합(총자산 5천억원↑)에 건전성 규제기준 차등 적용

- 대형 저축은행의 BIS 비율 기준을 상향(7→8%)하고, 향후 단계적으로 연체판단기준 조정*, FLC(미래상환능력 평가) 도입을 추진

* (정상) 2개월→1개월 미만, (요주의) 4개월→3개월 미만 등 은행 수준으로 조정

- 대형 조합에 대한 자본보전완충자본을 도입하고, 대형 조합의 거액 여신(예: 50억원)에 대해 FLC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 검토

② (엄격한 리스크 관리의 지속 추진) 상시감시시스템(저축은행), 조기경보시스템(상호금융) 등을 통해 시장불안요인에 선제적 대응

V. 향후 추진 계획

- 법령 제·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들은 '15년 하반기 중 완료
- 법령 제·개정 사항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'금융규제 개혁방안'에 반영하여 조속한 추진을 도모

※ 상세한 내용은 별첨 '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' 참조



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http://www.fsc.go.kr>

